# 2010도12244 공직선거법위반 (00시공무원의충성이메일사건) 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3. 11. 28.(금)에,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에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Ⅰ. 사안의 내용과 쟁점

- 피고인은 OO시청 소속 공무원인데, 인사권자인 OO시장이 피고인을 OO시 산하 △△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자, 위 인사발령에 보답하고 좋은 인상을 주 어 승진하려는 목적으로 OO시장을 위하여 선거운동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말부터 2010. 1. 10.경 사이에 △△동 통장 및 지역 유지 등을 상대로 OO 시장을 지지하여 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됨
  - ➡ 제1심(=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 □ 검사는 전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들 중 하나로, 피고인이 위 일시경 OO시청의 전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OO시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출하였

고, 그 이메일은 위와 같은 통장이나 유지들에게 OO시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 하였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 그런데 위 이메일은 OO시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임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중거를 유죄의 중거로 쓸 수 있는지(=중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음

## Ⅱ.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 **판결결과 : 상고기각** ➡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의 정당성 을 수긍하였음

#### ■ 판시사항

### ■ 私人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등 참조).
-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위 이메일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증거를 수집한 다른 공무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우편을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11호, 제49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자우편을 발송한 <u>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u>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응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측면도 있어 보인다.
- 그러나 이 사건 전자우편은 OO시청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송·보관되는 것으로서 그 공공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u>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u>행위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른바 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전자우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u>증거로</u> 함에 동의하였다.
-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우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u>중</u> <u>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u>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가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Ⅲ. 이 판결의 의의

●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데에 그 의미가 있음. 끝.